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0. 9. 8.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8. 25.
- 회부일 : 2020. 8. 26. (의안번호 : 20-102)

### 2. 제출이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별첨)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6. 4. ~ 6. 24. (제출된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영유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중 약 30%에서 심리·정서적  
으로 건강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과 발달 지원  
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  
한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  
스를 확충하고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양육자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발달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달  
심리치료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상담·치료·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보여짐.

-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상담·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이 사업은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됨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국시비 확보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적용범위),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0. 11. ~ 2024. 12.(5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홍보비	700	1,000	1,000	1,000	1,000	4,700
	검사비	16,000	98,000	98,000	98,000	98,000	408,000
	활동비	300	1,000	1,000	1,000	1,000	4,300
	소계(b)	17,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17,000
□ 총비용(a-b)		17,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17,000

4.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 보조금 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등 다각적 노력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오상철
연락처	02-3153-8961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부칙** <제17209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